

실로암노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별표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

2026.01.01. 기준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단위 : 원)

2. 재가급여 1회 방문당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수가	본인부담(15%)	급여제공시간	수가	본인부담(15%)
30분 이상	17,450	2,618	150분 이상	50,640	7,596
60분 이상	25,320	3,798	180분 이상	57,020	8,553
90분 이상	34,120	5,118	210분 이상	63,530	9,530
120분 이상	43,430	6,515	240분 이상	70,080	10,512

(단위 : 원)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의료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

4.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기본원칙 :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금액을 전액 비급여로 수납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개별적 요구에 의해 기관에서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그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